

의안번호	2219951
의 퇴 인	김남근의원
회 답 일	2026.9.11.
추계번호	26D3511

소비자집단소송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1조(당사자에 의한 신문 등)	법원은 책임확인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양 당사자로 하여금 피고의 책임의 준부의 증명 또는 채무액의 산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에 필요한 사람(당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상호간에 신문하게 할 수 있음(제1항) 1. 진술인의 수, 신문의 범위·방법·장소 및 변호사 선임여부 등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지 여부 2. 자료나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의 검증 또는 자료의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	재량규정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양 당사자로 하여금 신문을 하게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진술인의 진술을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영상녹화 및 녹음을 하도록 하여야 함(제3항) 1.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2. 「공증인법」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공증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의 신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사람	의무규정
2	안 제35조(소송비용의 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비자집단소송에 필요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제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1조(당사자에 의한 신문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35조(소송비용의 지원)	

2. 상세 사유

□ 당사자에 의한 신문 등 영상녹화 또는 녹음(안 제11조)

- 제정안에 따르면 당사자들로 하여금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에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상호 간에 신문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에게 진술인의 진술을 영상녹화 및 녹음을 하도록 하여야 함
- 당사자에 의한 신문 제도 도입 및 이를 녹음·영상녹화 하기 위해서 관련 절차를 운영할 공무원 증원이 필요한 경우 그 인건비와 법원에 진술녹취 장소를 설치함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당사자에 의한 신문 신청 건수 및 당사자에 의한 신문제도 도입에 따른 법원별 필요 인력 및 장비등을 알 수 없어 이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제정안에 따른 당사자에 의한 신문제도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나 현시점에서 당사자의 신청건수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 또한, 제정안에 따라 당사자에 의한 신문 제도를 운영할 때, 해당 절차의 실무를 담당할 사람이 법원공무원이고, 업무 증가로 인한 신규 증원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되며, 공무원이 아닌 경우(공증인 등) 수수료, 일당 및 여비 등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시점에서 법원이 영상녹화 등을 명할 사람의 자격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음
 - 진술녹취 장소 설치비용의 경우 기존 장소의 활용 여부 및 기존 장비를 고려한 법원별 영상녹화시설 등 장비 수요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소송비용의 지원(안 제35조)

- 제정안은 국가가 소비자집단소송에 필요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다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소송비용 지원 기준 및 금액을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곤란함
- 참고로 현재 대법원은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사업 중 소송구조 지원 사업을 통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재판에 필요한

-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하고, 개인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신청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하여 변호사 보수, 송달료를 지원하고 있음
- 대법원은 2027년 소송구조 지원 계획안으로 100억 1,1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표 1] 「소송구조 지원」 사업 예산 편성 현황: 2027년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예산
일반소송구조지원	6,975
개인파산회생소송구조지원	3,036
합계	10,011

자료: 대법원

- 또한 2021~2025년 5년간 소송구조 신청 건수는 다음과 같음

[표 2] 소송구조 신청건수: 2021~2025년

(단위: 건)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일반	11,010	11,723	12,248	12,082	13,294
개인파산회생	6,809	7,387	8,048	11,198	13,467

자료: 대법원

- 따라서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박은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은비	02-6788-4831	ebpark@nabo.go.kr